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10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문진석・이재관・한정애

장종태 · 김동아 · 이연희

김종민 • 박용갑 • 김문수

윤호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성 임대인들을 특정재 산범죄에 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세사기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특례) ①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이용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전세사기범죄의 가중처
	벌에 대한 특례) ① 「전세사
	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
	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
	조(제347조의 상습범만 해당한
	다)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
	로 가중처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
	<u>할 수 있다.</u>